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2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이승아 [6572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4036호

시행일자 2026. 7. 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(2026년 6월)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심사평가조정부-1346(2026. 6. 25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(총 9항목, 172사례) *2026. 6. 30. 공개

1.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(VAD) 요양급여 대상여부(22사례)
2.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(90사례)
3.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(품명: 졸겐스마주) 요양급여 대상여부(1사례)
4.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 및 Risdiplam 경구제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 요양급여 대상여부(42사례)
5.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) 요양급여 대상여부(5사례)
6.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(나769) 인정여부(2사례)
7.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·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-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(2사례)
8.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(surgical embolectomy) 요양급여 인정여부(1사례)
9. 수술 유형 참조,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-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(7사례)

○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 →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심사기준 → 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능함

○ 의협 홈페이지(https://www.kma.org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되었음

#붙임 : 202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